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8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 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### 가. 제안이유

- 주민고용보조금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고용을 촉진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“중장년층” 단어 삭제(현행 제2조제2호 삭제, 안 제5조제2호)
- 주민등록상 나이가 “36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취업 자”에서 “15세 이상인 사람”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해 “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중소기업”에서 “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”으로 변경(안 제6조제2호)
- 금천구 취업정보센터를 금천구 일자리센터로 변경(안 제9조제1항제1호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4호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제2항,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주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 - 안 제2조에서는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‘중장년층’ 삭제하고
  - 안 제5조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‘36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취업 자’에서 ‘15세 이상인 사람’으로 변경함.
  - 안 제6조에서는 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해 ‘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중소기업’에서 ‘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’으로 변경함.
- 본 개정안은 주민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